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신고수리보류조치 요건 추가〉

■ 박형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348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신고수리보류조치 요건 추가	3

I. 개요

1. 박형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34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형수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 8.

(3) 회 부 일 : 2025. 1. 9.

나. 제안이유

최근 국내에서는 포획·채취가 금지된 암컷대게와 체장미달 대게가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됨으로써 국내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수산자원 보호 및 국민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큼.

이렇듯 국내법으로는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자원 등의 식품이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유통되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이 없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내법으로 포획·채취가 금지되어 있는 식품의 수입신고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식품 유통이 국내법과 저촉되는 등 그 신고수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이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수입신고된 당해 식품의 국내 유통이 국내법과 저촉되는 등의 사유로 그 신고수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약처장이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4항제6호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신고수리보류조치 요건 추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신고수리보류조치의 요건에 ‘그 밖에 해당 식품 유통이 국내법과 저촉되는 등 수입신고 수리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 ③ (생략)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이하 “신고수리보류조치”라 한다)할 수 있다.	④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u>그 밖에 해당</u> 수입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u>해당</u> ----- ----- ----- -----

현행	개정안
<신설> ⑤ ~ ⑨ (생략)	6. 그 밖에 해당 식품 유통이 국내법과 저촉되는 등 수입신고 수리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⑤ ~ ⑨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함)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되,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면서,

제4항에서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된 수입식품등이 i) 테러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 i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2)에 따른 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경우,
- iii) 인체에 위해한 물질에 오염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항목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정해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 iv) 국내에 신고·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농약, 동물용 의약품,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물질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해당 원료 또는 성분에 관하여 정해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 v) 그 밖에 해당 수입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이하 “신고수리보류조치”라 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①~② (생 략)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이하 “신고수리보류조치”라 한다)할 수 있다.

1. 테러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체에 위해한 물질에 오염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항목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정해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4. 국내에 신고·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농약, 동물용 의약품,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물질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해당 원료 또는 성분에 관하여 정해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해당 수입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개정안은 최근 국내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된 암컷대게와 체장미달 대게가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됨으로써 국내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이 없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고수리보류조치 요건에 ‘그 밖에 해당 식품 유통이 국내법과 저촉되는 등 수입신고 수리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 암컷대게와 체장미달 대게 등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抱卵)한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채취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4)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채취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抱卵)한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채취를 금지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수산동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수중에 방란(放卵)된 알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어망 또는 어구 등에 붙어 있는 알을 채취하는 경우

2. 행정관청이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하여 포획·채취하는 경우

□ 이에 따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구역 및 수심은 별표 1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별표 2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은 i)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 ii)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 및 민꽃게의 암컷으로 규정하고 있는바,⁵⁾

현재 국내에서는 대게류는 주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붉은 대게는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포획·채취가 금지되어 있고,⁶⁾ 9센티미터 이하 대게 및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은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되고 있음.

□ 그런데, 일본산 암컷 대게가 국내에 수입·유통되면서 국내산 암컷 대게 불법 포획과 혼합 판매, 원산지 속이기 등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④ 시·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포획·채취금지)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구역 및 수심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

2.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 및 민꽃게의 암컷

6) 일부 해역 등의 경우 그 금지기간이 달리 설정된 경우가 있음.

이에 따라 경상북도와 어민들은 일본산 암컷 대게의 유통금지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⁷⁾

- 참고로 최근 10년간 일본산 대게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에 69톤(24건)이 수입되는 등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10년간 일본산 대게 수입 현황 >

(단위: 건, 톤, 천\$)

품목	2016년			2017년			2021년			2024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총 합계	4	17	355	1	2	45	1	1	21	24	69	548
대게(활)	4	17	355	1	2	45	1	1	21	-	-	-
베어다이 대게(활)	-	-	-	-	-	-	-	-	-	24	69	548

* 2015년, 2018~2020년, 2022~2023년은 일본산 대게 수입이력이 없음.

- 이에 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신고수리보류조치 요건에 ‘그 밖에 해당 식품 유통이 국내법과 저촉되는 등 수입신고 수리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일본산 암컷 대게에 대한 신고수리보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내법으로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자원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이 가는 측면이 있음.

-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⁸⁾

7) “암컷대게 수입, 유통질서 파탄 내려나”(경북매일, '24.11.10.)

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신고수리보류조치 또한 수입신고된 수입 식품등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조항임을 고려할 때,

국내 수산자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그 밖에 해당 식품 유통이 국내법과 저촉되는 등 수입신고 수리를 하기에 적절 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신고수리보류조치의 요건에 추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박형수의원 등 11인의 대표발의로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자원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에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34호)이 발의('25.1.8.)되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다. 관계 부처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입신고의 수리 보류 조치는 수입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동물의 암수 구분 및 크기 제한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모든 사항을 수입신고 수리 보류 조치 요건에 포함하는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493